

의안번호	제 1020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임동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3월 8일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동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20
----------	------

발의연월일 : 2022년 3월 8일
발 의 자 : 임동현, 정상교, 최경천,
김국기, 김영주, 박성원,
이수완

1. 제안 이유

다양한 진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로활동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진로활동실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1조 ~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교의 장은**”을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6조와 제7조제1항 중 “**학교의 장**”을 “**학교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진로활동실) ① 교육감은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진로수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진로활동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진로활동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제2항 중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장은**”을 “**위원장은**”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4호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제1항 중 “**2회**”를 “**1회**”로, “**의장이 필요하다고**”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로, “**의장이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開議)하고**”를 “**개최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생략)</p> <p>② <u>학교의 장은</u>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진로교육운영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p> <p>제6조(진로 심리검사) <u>학교의 장</u> <u>은</u>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 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진로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7조(진로상담) ① <u>학교의 장은</u>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 원할 수 있는 진로상담을 제공 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u><신설></u></p>	<p>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 라 한다)은</u> ----- ----- --.</p> <p>제6조(진로 심리검사) <u>학교장은</u>--- ----- ----- ----- ----- -----.</p> <p>제7조(진로상담) ① <u>학교장은</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진로활동실) ① <u>교육감은</u> <u>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진</u> <u>로수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u> <u>학교에 진로활동실 설치를 지원</u> <u>할 수 있다.</u></p> <p>② <u>진로활동실이 설치되지 않은</u> <u>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별도</u> <u>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이</u></p>

제8조 · 제9조 (생략)

제10조(충청북도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① (생략)

② 도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④ 협의회 의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 ⑥ (생략)

제11조(도협의회 기능) 도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도협의회 회의) ① 도협의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 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11조(충청북도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위원장은 ----- --부위원장-----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도협의회 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 위원장 -----

제13조(도협의회 회의) ① -----
----- 1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략)

제13조 ~ 제16조 (생략)

-----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 개최하고-----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 제17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관계 법령

□ 진로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수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을 말한다.](#)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10조(진로심리검사) 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이하 “진로심리검사”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진로상담) 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에 관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제정수반요인

- 조례 개정안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및 학생 진로지도 내실화를 위해 학교 내 진로전용 공간인 진로활동실 설치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진로활동실 구축 비용 추계	연도별 시설비 추계					
산출기초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1. 진로활동실 신규 구축	6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660,000

※ 학교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산출결과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6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660,000
자체수입		6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660,000
세 출		6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660,000
진로활동실 구축		6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66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0
	국고보조금						0
	보통교부금						0
	특별교부금						0
자체 수입	소 계	6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660,000
	자체수입	6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660,000
지방채							0
기 금							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0